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무시간 등록방법

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복무처리

-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, 치료·격리 기간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'유급병가'로 처리 ··· 해당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가능
 - 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: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
 - ②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: 1일 8시간,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 - ⇒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'병가'에 불포함 가능
 - ※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·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

○ 근무시간 등록방법

- **휴가사유 "예외인정"**으로 **선택 후 등록** 및 저장
 - ※ 등록방법은 현재 종사자 휴가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함

